

인권의 관점에서 다문화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기술적 연구

신 경 주,* 신 명 철**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technical issues and multicultural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Kyoung-Jou Shin,* Myoung-Chul Shin**

President, Child Care Synthesis Support Center of Gimpo City*

Continuing Education Center, Seoul Social Welfare Graduate University**

Abstract The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is to leverage on the policy makers and school education, and research in terms of human rights issues and for the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by seeking an effective training plan with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t. The efforts to address human rights issues through real multicultural care center starts with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multicultural education methodology that can protect the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immigrant youth in a multicultural society such situation in Korea by. Accordingly we suggest that it is appropriate to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moral multicultural care center for human rights education. Cant because the regular students on the basis of morality that respects the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immigrant adolescents 'human rights' training done 'pursue human rights' migrant worker, immigrant youth in their own rights, as well as multicultural education is through morality The Seen to suggest ways through th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Key Words : multiculturalism, human rights education, youth rights

1. 서론

세계화 시대에 문화 간 교류는 일상의 생활화이다. 자유로운 해외여행이나 미디어를 통한 정보와 전달, 지구촌 문화의 혼재, 그리고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 공동체의 출현은 우리로 하여금 타 문화와의 접촉을 용이하게 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성과 이질성, 문화적 충격과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사회과학적으로 문화라는 것은

*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논문 접수 2014년 10월 15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4년 11월 18일

복잡한 개념이다. 전통적으로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습득한 지식과 신념, 예술, 도덕과 윤리, 법, 관습과 습관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

문화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공유와 학습의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이기도 하다. 또, 개인과 사회의 생존과 적응, 성장과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문화는 제도나 역할, 유물과 같은 외적인 표상, 가치관이나 태도, 지각의 스타일이나 정서, 감각의 스타일, 의식유형, 인식론과 같은 내적인 표상도 담겨진 총체이다. 따라서 문화는 한 사회 속에 담겨진 삶의 방식이나 가치, 취향의 소통 과정에서 문화를 받아들이는 주체의 태도나 이미지 형성에 따라 맥락적 측면의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전통적으로 가족이나 학교, 종교 등의 제도에 의해서 계승되고 전파되었던 문화적 가치는 대중매체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그 매개의 방식이 미디어로 대표되는 대중매체로 변화되면서 문화적 전수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본격적인 다문화교육 준비기에 접어들었다(전재영, 2011). 2006년 들어 정부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의 케도에 진입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으며, 그 이후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학교 차원에서는 정부의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대책’에 의거하여 교육정책의 중요한 한 영역으로 다문화교육이 정착을 시도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 논의가 기존 교육과정보다 확대되어 편성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다문화 역량을 길러가는 공식적인 첫 출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다문화 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통하여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 모두를 위한 다문화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 친화적인 교육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회 차원에서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시민운동 형태로 진행되어 오던 다문화 관련 활동이 사회 다문화교육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다문화교육은 100여개가 넘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개설은

물론 인권, 보육, 건강, 교육은 물론 법과 제도 등 다양한 영역으로까지 실천적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논의는 지금 바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논의와 검토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다문화교육이 결국 교육의 한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적 검토와 처방은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구와 그 성과가 방대하게 축적되고 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다문화 정책화 노력과 다문화교육의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교육 연구의 실태를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다문화교육기에 접어들 한국 사회의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의미 있는 정보를 마련하고자 한다.

2. 다문화인권교육실태

인권중심의 다문화교육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교과로 도덕과 윤리교과를 채택하였다. 그 중 3학년 도덕과 윤리교과서를 분석하여 다문화 교육적 요소와 인권교육의 내용영역을 조합하여 인권중심의 다문화교육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교수-학습 방안 측면에서 인권중심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에 이를 활용한 수업의 효능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인권중심의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도덕과 윤리교육이 의미 있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역할을 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문화가정 학생에게는 긍정적 자아 정체성의 형성을 돕고 일반 학생에게는 다문화 구성원의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제규약

2.1 주요 국제인권규약과 다문화교육

인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향유하는 권리이다. 인권의 의미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으며 모든 문화와 종교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인권 이념’은 근대적 철학적 사상의 산물이며 보편적 인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인권선언을 통해 인류공동의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인권은 온정이나 자비에, 형제애, 사랑에의 호소가 아니다. 인권은 법의 일부로서 법원에 의해 집행 가능해야 하고 국가와 정부를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차와 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오늘날의 인권은 국가의 정책뿐 아니라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주된 규범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인권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인권의 규범과 현실의 괴리는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인권의 여러 내용들 중에서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차별금지에 대한 평등권 교육에 대한 권리, 문화적 권리 등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 인권규약들은 다문화 교육과 인권과의 관계를 더욱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인권을 통해 다문화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조망하는데 있어서 기본 틀의 역할을 할 것이다.

2.1.1 주요국제인권규약

1966년 12월 16일 제21차 총회에서 UN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채택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 인권규약으로 세계 인권 선언에 천명된 권리와 자유를 조약형식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약에서 나타난 외국인 및 국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2.1.1.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세계 인권선언은 국제 관습법으로써 모든 나라에 법률적 효력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으나 이는 통설이 아니며 따라서 권고로서의 효력 밖에 없는 유엔 총회 결의일 뿐이다. 따라서 세계 인권선언을 각국에 법률적 강제력이 있도록 한 것이 사회권 규약과 자유권 규약이다. 세계 인권선언과 비교할 때 국제 인권규약에 나열된 권리들은 법률적인 면에서 세부적이며 더 많은 권리들을 새롭게 추가하기도 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소수집단에 대한 인권보장,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 받을 권리, 모든 아동들은 국적을 취득 할 권리, 모든 아동은 미성년자로서 받아야 할 특별한 보호 조치를 받을 권리 등이다. 특히 규약 제 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피부색·언어·성·언어·종교 또는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이 규약 제6조는 모든 개인에게 법 앞에서의 평등 및 법에 의한 차별 없는 보호에 대한 권리를 부여 할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며 인종·피부색·성·언어·종교 또는 기타의 의견·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련한 차별에 대하여 동등하고 효과적인 인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2.1.1.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3조에서는 남녀의 동등한 권리 확보를 규정 하였고, 제6조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의 권리와 가입국의 의무 규정, 제7조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 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제8조에서는 노동 3권, 제9조에서는

사회 보장에 관한 권리를 규정 하였다. 또한 동 규약 제10조에서는 결혼과 가정 모성 보호에 관한 권리, 제11조에서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제12조에서는 건강권, 제13조에서는 교육의 권리, 제15조에서는 문화생활 참여권 등을 규정한다.

2.1.1.3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 등의 국제인권법의 규범은 이주노동자에게도 적용되지만 그것은 이주노동자 고유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반성 하에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자유권과 사회권의 전반적 권리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포괄적인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 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법적·정치적·경제적·시민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립하고, 부가적인 사항은 각국의 법률에 의해 추가적인 보장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협약은 이주 전 과정에 걸쳐 이주 노동자의 노동 착취 근절과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이주 노동자의 불법 비밀 채용과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미신고 혹은 비정규 방식의 지양을 강조한다.

이 협약 제 2조 1항에 의하면, 이 협약이 적용되는 이주노동자는 ‘그 사람이国籍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 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자’로서 월경근로자, 계절노동자를 포함하여 특정 범주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없는 자영노동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보호 대상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이 협약은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에게도 적용되며, 취업국에 체류하여 유급활동을 하는 전 기간은 물론 이주의 준비, 출국, 통과 그리고 귀환을 포함하여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전 이주 과정에 적용된다. 다만, 국제기구 공무원, 투자자, 난민,

유학생 등은 제외 된다. 이 협약 제7조에서는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종족적·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에 따라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여 이주노동자의 이주과정 및 정착의 모든 과정에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협약 제24조에서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모든 장소에서 법률 앞에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제30조에서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그 나라의 국민과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교육을 받을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그 자녀가 공립 유치원 및 공립학교에 취학 할 것을 원할 때,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의 체류 내지 취업이 비합법적이거나 취업국에서 그 자녀의 체류가 비합법적임을 이유로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다문화 교육과 인권

다문화 교육은 인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집단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상호 이해와 평등관계를 중시하고 민족 사회적 지위 성별·종교 이념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집단의 문화가 동등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며 학생들이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지식·태도·가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 하에 법적 공권력에 의한 인권 투쟁 억압의 역사 때문에 인권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은 그 동안 다문화 구성원들이 거주하는 특수한 지역에서 한국문화와 생활에 대한 적응 교육이라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

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인종 민족 집단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상호 공생하는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문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다른 인종과 민족의 기본권 존중 다문화 사회의 법적문제 해결능력,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과 공생의 태도,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등 다양한 수준에서 시민의 자질이 요구 된다. 인권교육도 다문화 교육과 유사점이 많다. 「세계인권선언」(1948)은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하였다.

2005년 UN에서는 인권위원회 결의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Res/2005/61)에서 “인권교육이 장기적이며 평생교육 과정으로서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다른 이를 대하는데 관용하며 모든 사회에서 이것이 지켜지는 수단과 방법을 배울 것을 확신하며 인권교육이 인종·피부색·성·언어·종교·정치 또는 기타 의견 국적 혹은 신분·재산·출생 또는 기타 배경과 같은 것으로 차별 받지 않으면서 모든 인간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존중받는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평등을 도모하는데 일조하고 분쟁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1966년 유엔의□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따르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내용에는 ① 근로의 권리, ② 공정하고 쾌적한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③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에 관한 권리, ④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에 관한 권리, ⑤ 가정보호 및 지원, ⑥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 ⑦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⑧ 교육에 대한 권리, ⑨ 문화·과학·예술 활동의 권리 등이 있다.

2.3 다문화 인권교육의 구성

최근 다문화교육은 문화이해를 통해 차이를 존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만 이해하는 것으로는 현재 다문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들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는 존중도 중요하지만 다문화속에 존재하는 차별의 문제 차이의 인정을 넘어 보편적 인권의 실천을 위한 제대로 된 다문화 인권교육이 요청된다. 다문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정부주도의 문화 이해 중심교육과는 다른 인권적인 고민을 포함한다. 문화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외부 강사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문화이해 중심 교육의 다문화 교육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단순히 문화적 차이만을 이해시키면서 오히려 낙인효과를 양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각 문화의 가치를 알고 모든 문화가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다르지만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단순한 주장만 반복함으로써 오히려 다문화 교육을 받은 후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더욱 의식하게 만들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한국인이라 믿었던 정체성의 혼란만 가져와 오히려 학교에서 낙인찍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다문화 교육은 주로 다른 나라에 대한 문화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거나 다문화 관련 개념 설명 위주의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본질적인 가치관과 문화적 시각 형성을 위한 다문화 교육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다문화 인권교육은 학습자가 개인적 차원이나 사회적이고 인류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회변화를 위해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습관이나 자질 형성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 시기의 학습자는 태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나와 다른 타자의 존재를 이해하고 이들과 더불어 평화적이

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의식을 형성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인권교육은 연대를 통한 실천을 강조하기 때문에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안목을 길러 주어야 한다. 즉, 적극적 다문화 인권교육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의 지속화를 막고 오늘날 평등이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이라는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고 적극적인 배려를 하는 방향의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3. 다문화 인권교육의 개선방안

오늘날 한국사회의 다문화 교육은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상호의존과 이해가 요구되는 다문화 사회가 도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다른 나라나 민족에 대한 다문화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나 주로 다른 나라에 대한 문화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거나 다문화 관련 개념 설명 위주의 교육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또한 소수자를 주류 사회에 적응시키고 동화시키기 위한 교육이 주된 다문화 교육이라고 생각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결혼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다수자가 소수자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공동체로 나아가는 방향으로의 다문화 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실천적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인 약자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다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으로서 사회적 다수자가 소수자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다문화 인권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

3.1 다수 대상자 교육

그 동안 실시된 다문화교육은 소수자를 주류 사회에 적응시키고 동화시키기 위한 교육이 주된 다문화 교육이라는 생각 하에 실질적인 교육

이 외국인노동자, 탈북자, 결혼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다수자가 소수자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방향의 교육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사회적 소수를 위한 교육으로 폄하하는 오해가 있다. 상당수 사람들은 다문화 교육을 사회적 소수를 위한 교육 즉, 코시안·이주 외국인 노동자 자녀·새터민 학생 등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교사들은 우리 학교에는 그런 학생이 없다는 이유에서 다문화 교육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문화 교육은 모든 학생이 문화적·민족적 다양성이 증대되는 오늘날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를 함양하는 총체적 교육 개혁 운동이지 사회적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문화 교육의 목표는 남녀 학생 모두와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특수한 학습자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 한다는데 있다. 다문화 교육은 미래의 한국 사회에서 모든 학생이 효과적으로 생존하고 활동 할 수 있는 지식·기능·태도를 길러주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한국사회와 세계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개념, 기능과 태도를 갖도록 돕지 못한다면 OECD 다문화 민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을 것이다.

3.2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다문화교육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문화 이해 교육 홍보나 행사성 사업에만 지출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 차원에서 실효성을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2012년에 발표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연구’에 의하면 다문화 가족지원 정책에 투입된 예산 중 대부분이 다문화가족지원이나 체류 외국인 생활 편의 제공 등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현

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들도 이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사회 적응교육 여행자 교육과정이 대부분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은 부족하다. 그리고 이주민을 위한 사회적응 교육이 제공되고는 있지만 그러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무지, 편견, 차별의 반 인권적 행태에 대한 올바른 대응과 방법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대한 문화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거나 다문화 관련 개념 설명 위주의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본질적인 가치관과 문화적 시각형성을 위한 다문화 교육이 여전히 요구 된다.

3.3. 배려를 통한 인권교육

아시아에서는 유교, 불교 등의 영향으로 인권의 개념이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는 유교의 영향을 살펴 볼 수 있다. 유교의 특징은 권위에 대한 숭배사상 단체 중의 개인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권위에 대한 숭배사상은 인권관에 대한 영향을 주로 강한 정부를 옹호하고 국가가 인권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일으키는 작용을 강조하는데서 나타난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서양과 아시아의 인권개념은 충돌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발전, 주권의 문제, 개발권과 생존권, 평화권, 민족자결권 등의 공동체적 인권을 강조하고 있고, 연대적 권리로서의 그리고 연대적 존중으로서의 인권이라는 더욱 폭넓은 접근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 인권헌장의 제2조 3항을 보면 “인권은 보편성과 위기적 총체성을 가지는 실제로 인권이 향유되고 있으나 중시 되느냐는 사회·경제·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인권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와 정책의 기초이다. 따라서 인권의 추상적 규정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우리는 광범위한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는 특정 집단들의 상태를 조사하여 아시아적 상황에 맞도록 인권을 구체화해야 한다. 아시아

적 특수성에 맞도록 인권을 규정하고 실행 할 때에만 인권의 향유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 아시아는 전 세계적인 인권옹호 운동에 기여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인권의 특수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도덕과 윤리 교과를 통한 다문화 인권교육은 이주 노동자,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인권추구’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아는 도덕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한 ‘인권보호’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 속에서 모두의 인권이 보장받는 인권사회를 이룰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현재 한국 사회가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지만 이주민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은 여전히 편견과 차별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 이주민을 둘러싼 많은 문제들의 근원에는 오래된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인권에 대한 낮은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한국 다문화 사회의 개선을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다문화 교육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은 보여주기식 다문화 교육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교육은 거의 문화 이해 교육과 여행자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문화적 차이만을 이해시키면서 오히려 차별을 심화시키고 낙인효과만 가져오고 있다. 학교에서는 ‘다르지만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단순한 주장만 반복하면서 효과 없는 다문화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은 많지만 제대로 된 다문화 교육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다문화 교육방법론의 정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다문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 방법론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하여 배려 중심 다문화 인권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인 다문화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다. 이에 따라 배려중심 다문화 인권교육은 다문화 인권교육을 도덕과 윤리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덕과 윤리를 통한 다문화 인권교육은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청소년 그들 자신의 ‘인권추구’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도덕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한 ‘인권보호’ 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과 윤리에서 효과적인 다문화인권교육을 위해 배려 윤리를 도입하였다. 그 동안 문화 이해 교육에만 집중 되어 있었던 다문화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환기 시키고 도덕과 윤리에서 가능한 다문화 인권교육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배려중심 다문화 인권교육’은 윤리적 이상의 고양을 위한 다양한 교수 방법들을 제공해 주고 다문화 교육 교수방법의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권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배려중심 다문화 인권교육은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도덕과 윤리를 통한 방법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다문화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실무에 중심을 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 [1] 교육인적자원부, 『도덕과 윤리 교육 과정』, 서울교육인적자원부. 2007
- [2]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 3』, 서울교육과학기술부. 2008.
- [3] 구정화·설규주·송현정,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4.
- [4] 구정화·박윤경·설규주,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동문사, 2010.
- [5] 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서울국가인권위원회, 2005.
- [6] 국제앰네스티,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인권상황』, 런던 국제 앰네스티. 2009.
- [7]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12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 서울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2012.
- [8] 경기도 다문화 교육센터편 최충옥 외 공저,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과주양서원. 2009.
- [9] 김태훈, 『덕교육론』, 서울양서원. 1999.
- [10]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서울 후마니타스. 2008.
- [11] 박병기 외 3인, 『아동인격 교육론』, 교양 인간사랑. 1999.
- [12] 박병춘, 『배려 윤리와 도덕과 윤리교육』, 서울울력 2002.
- [13] 박효종, 『국가와 권위』, 서울 박영사. 2001.
- [14] 서울대학교 중앙 다문화 교육센터, 『인권관점에서 다문화 교육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국가 인권위원회. 2008.
- [15] 서울대학교 중앙 다문화 교육센터, 『다문화 인권교프로그램 개발 연구 기초 연구 보고서』, 서울국가 인권위원회. 2010.
- [16] 안경식 외,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서울학지사. 2008.
- [17] Brown,L.M.& Tappan,C.& Gilligan C, Listen to Different Voice,Boston:AllynandBacon. 1995.
- [18] Dempsey, V. & Noblit, G, The demise of caring in an African-American community: One. consequence of school desegregation.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6.
- [19] Derman-Sparks,L, Anti-bias curriculum : tools for empowering young children, Washington,DC :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of Young Children. 1989.
- [20] Pang,V.O., Multicultural education:

acaring-centered, reflective approach,
Boston: McGraw-Hill. 2005.

· 관심분야 : 아동복지
· E-Mail : younsae@hanmail.net

- [21] Parekh, B, Rethinking multiculturalism :culturaldiversity and politicaltheor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 [22] Ramsey, P. G, Teaching and learning in a diverse world : Multicultural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New York:Teachers College Press. 1987.
- [23] Sichel, B. A., Moral Education: Character, Community and Ideal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8.
- [24] Sleeter ,C .E .& Grant, C. A., Making Choice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JohnWiley & Sons. 2002.
- [25] Starkey, H., The Challenge ofhuman rights education,London: Cassel. 1991.

신경주(Kyoung-Jou Shin)



- 2011년 2월 : 숭실대학교 유아교육과(석사)
- 2012년 3월 ~ 현재 : 안양대학교 박사과정 재학
- 2014년 6월 ~ 현재 :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 관심분야 : 유아수학, 유아과학

아과학

· E-Mail : kjshin6601@hanmail.net

신명철(Myong-Chul Shin)



- 2001년 2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정책학과(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협성대학교 박사과정 재학
- 2013년 3월 ~ 현재 :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

교 평생교육원 교수